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8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한민수 · 김 윤
강준현 · 김주영 · 위성곤
서미화 · 이정문 · 정태호
전용기 · 최혁진 · 한정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,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 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	제32조(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 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 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 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 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 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 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「 <u>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</u> 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 <u>이놀이시설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